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 안내

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. 8. 12 공포되었으며, 이에 따른 「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(안)」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-703호를 통하여 안내되었습니다.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]

★ 「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(안)」관련사항

-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(안)은 관계부처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. 현재 11월 초에 심사가 종료될 예정이나 심사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은 고시가 확정되면 바로 신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- 고시의 내용이 확정시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

-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내용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붙임: 시행규칙_설명.pdf